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36

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이해식·김교흥·한민수

채현일 • 박용갑 • 박상혁

박정현 • 양부남 • 김원이

이병진 • 민병덕 • 서영석

서영교 · 염태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대상자가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고, 조사일시에 대하 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, 조사대 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,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,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·금융·공정거래 등의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

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,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.

법률 제 호

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"제5조(행정조사의 근거)"를 "제5조(행정조사의 근거), 제22조(조사원 교체신청), 제23조(조사권 행사의 제한)"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
- 7. 이 법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신청・요청 등을 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사항
 - 가.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
 - 나.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 연기신청
 - 다.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 거부
 - 라.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
 - 마.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
 - 바.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입회·의견진술 및 녹음·녹화

제1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

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9조제1항제7호의 사항
- 6. 제9조제1항제7호의 사항

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제9조제1항제7호의 사항
- ④ 조사원은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조사대상자는"을 "조사원은 조사대상자에게"로, "진술하게 할 수 있다"를 "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석요구서 발송 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, 제10조 및 제 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 서 등을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현장조사 시 조사대상자 등의 입회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현장조사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조(적용 범위) ①・② (생 제3조(적용 범위) ① · ② (현행과 략) 같음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(3) -----(행정조사의 기본원칙), 제5조 (행정조사의 근거) 및 제28조 (행정조사의 근거), 제22조(조 (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 사원 교체신청), 제23조(조사권 사)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행사의 제한)-----대하여 적용한다. 제9조(출석 · 진술 요구) ① 행정 제9조(출석·진술 요구) ① -----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 석 · 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6.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7. 이 법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<신 설> 신청 ·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

<u>6.</u>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제10조(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저요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5. (생략)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자에게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

나. 제18	3조제1항에	따른	행정
	연기신청		

<u>다.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</u> 조사 거부

<u>라.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</u> 제출

<u>마.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</u> 원 교체신청

바.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따른 관계 전문가의 입회・의견진술 및 녹음・녹화

- 8. (현행 제6호와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세10조(보고요구와	자료제출의		
요구) ①			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9조제1항제7호의 사항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2	 	 	

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6. (생략)

제11조(현장조사) ① 조사원이 가 택・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 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 게 발송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<u>7.</u> (생 략)

②・③ (생 략)

<신 설>

- 제23조(조사권 행사의 제한) ① (생 략)
 - ② <u>조사대상자는</u> 법률·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 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

,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제9조제1항제7호의 사항
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11조(현장조사) ①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9조제1항제7호의 사항
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조사원은 현장조사를 할 때
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
인을 입회시켜야 한다.
제23조(조사권 행사의 제한) ①
(현행과 같음)
②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에게

거나 의견을 <u>진술하게 할 수</u> <u>있다.</u> ③ • ④ (생 략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